

일본, 잔류농약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실시

신 용 광*

일본에서는 모든 농약을 대상으로 잔류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2006년 5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이지만 국내적으로는 농약의 비산과 혼입에 따른 농가 간의 분쟁가능성과 국제적으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란

포지티브 리스트제도는 모든 농약을 리스트화하여 ‘잔류농약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3년 5월에 후생노동성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食品衛生法을 개정하고 3년 이내에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시행이 2006년 5월 29일이다.

농약에 관한 현행 법률에는 農藥取締法과 食品衛生法이 현존하고 있다. 農藥取締法은 농림수산성이 소관하는 제도로 농약의 유통과 생산단계에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ykshin22@krei.re.kr 02-3299-4333

의 사용을 규제·관리하고 있으며, 食品衛生法은 후생노동성 소관으로 식품의 유통을 규제하고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제도는 현행의 법률을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새로이 2가지의 기준(잠정기준과 일률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2. 식품안전성 기준

현행 제도하에서 농약의 잔류기준은 독성시험자료 등을 기준으로 ADI(Acceptable Daily Intake)*라 불리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잔류기준으로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서 검출될 경우에도 식품유통에는 규제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가축용 의약품 및 사료첨가물은 식품위생법에 기초하여 잔류해서는 안되는 물질을 잔류기준으로 설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의 유통만을 규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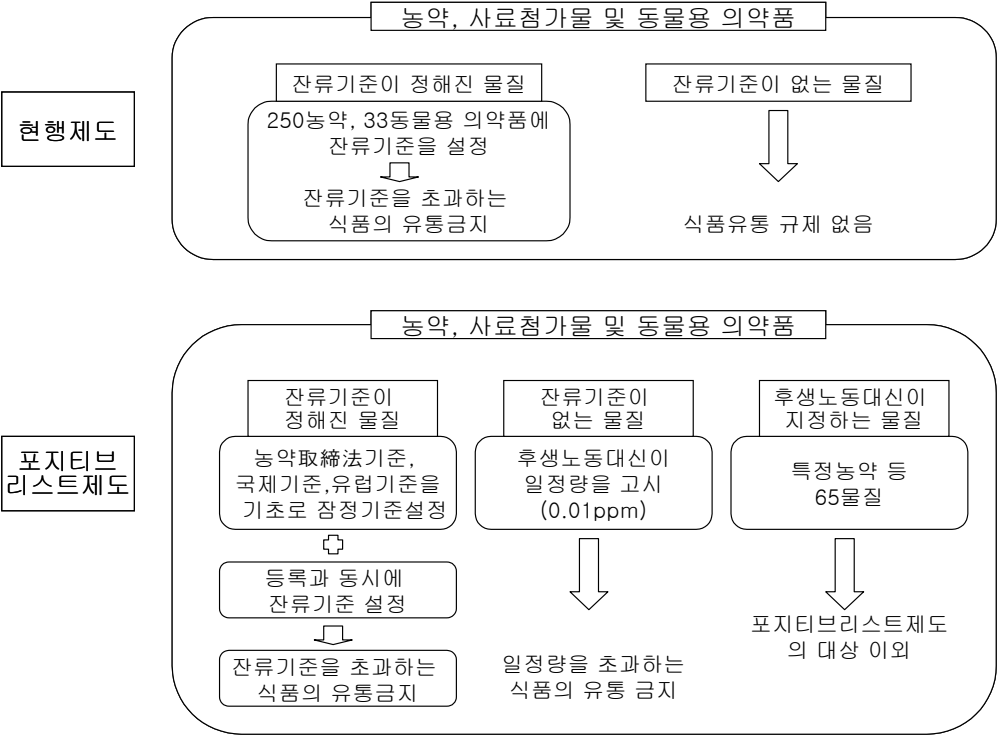
이에 반하여 포지티브 리스트제도는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모든 농약에 대하여 ‘잔류농약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농약, 사료첨가물, 동물용의약품은 잔류기준이 설정된 물질, 제도 대상외의 물질, 그리고 잔류기준이 미설정된 물질로 분류하여 다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잔류기준이 설정된 물질은 식품별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가 잔류하지 말아야하며 현행제도와 차이가 없다. 다음으로 제도대상외의 물질은 정부가 사람의 건강을 훼손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물질로서

* ADI란 사람이 어떤 물질을 매일 섭취할 경우에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섭취량 기준

살균, 살충제로 사용하고 있는 65가지 종류의 물질이다. 마지막으로 잔류기준이 미설정된 물질은 잔류기준이 없기 때문에 새로이 ‘잠정기준’과 ‘일률기준’을 설정하였다. 잠정기준은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가운데 일본에서는 잔류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제기준이나 외국의 기준을 참고로 잠정적으로 설정된 기준이다. 그러나 잠정기준을 설정할지라도 모든 농약이나 농산물 하나하나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에 대해서는 일률기준(일률기준의 잔류기준치는 0.01ppm임)을 적용하고 있다.

그림 1 현행제도와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의 비교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

3.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대상

‘포지티브 리스트제도’는 현존하는 모든 식품이 대상이며 농산물 생산에 사용된 농약의 잔류기준 초과가 금지된다. 농산물과 더불어 육류, 계란, 우유와 같은 축산물도 포함된다. 축산에서는 품질유지나 영양분 투입을 위하여 사용한 사료첨가물,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한 의약품에 포함된 물질은 농약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잔류기준치가 설정되었으며 이를 초과하여 검출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된다.

사료에는 곡류나 건목초가 사용되고 있으며, 여기에 부적정한 농약이 잔류되어 있을 경우 이를 섭취한 가축에 잔류하게 되며 제품으로 출하될 가능성이 높다. 사료첨가물에 대해서도 항생물질 등이 축산물에 남아 잔류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면 식품위생법에 위반하게 된다. 동물의약품에도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잠정기준이나 일률기준이 설정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4.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대한 대응책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도입되어도 농약의 사용규제가 엄격해 지거나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물질에 대한 잔류기준이 설정되고 특히 일률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잔류농약 기준치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농가에서는 포지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농약을 기준치 이내로 사용하고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농약의 비산이나 혼입문제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농약이 인근으로 비산되어도 인근농가의 농산물에 농약의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농약을 대상으로 모든 식품에 기준치가 설정된다.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농약이 농산물로부터 검출되거나 반대로 자신이 사용한 농약이 타인의 농산물로부터 검출될 가능성도 있어 농가 간의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단일포장에서 여러 종류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나 인근포장과 근접한 경우에는 일률기준이 적용되는 농약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농약을 살포한 후에는 남아 있는 잔유물을 깨끗하게 세척함으로써 다른 작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농가의 생산현장에서 농약의 적정관리, 적정사용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일률기준이 적용되는 물질이나 새로이 개발된 물질을 원료로 한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 사료첨가물 등의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로부터 새로 개발된 농약을 사용한 작물을 수입할 경우에는 스스로 독성이나 안전성 자료 등을 모두 준비하여 후생노동성이 신고하여야 한다.

자료 : [http : //www.maff.go.jp](http://www.maff.go.jp)(일본 농림수산성) 등